『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통계정보보고서

2019. 12.

본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는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과정에서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로 작성기준 시점에 따라 현재의 통계작성 정보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차 례〉

Ⅰ. 통계개요 ····· 1

Ⅱ.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 5

Ⅲ. 통계설계 ····· 6

Ⅳ. 자료수집 ····· 10

Ⅴ. 자료처리 ····· 13

Ⅵ. 통계공표 및 품질평가 ····· 14

Ⅶ. 통계작성 문서화 및 이용자서비스 ····· 30

Ⅷ. 통계기반 및 개선 ····· 34

Ⅸ. 참고문헌 ····· 35

◆ 보고서 개요 ◆

이 보고서는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을 생산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보고서의 작성목적은 통계작성 배경, 연혁, 이용자 및 용도와 조사에서 이용되는 개념과 방법론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고자 하는 통계작성 담당자(통계 전문이용자, 품질진단자 또는 승인담당자)에게 통계과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계개요, 통계설계, 자료수집, 자료입력 및 처리, 통계 결과 및 공표, 이용자서비스, 통계 기반 및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Ⅰ. 통계개요

1. 통 계 명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승인번호: 152005)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승인된 일반통계 제152005호(승인일자: 2006. 8. 22.)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통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근거로 수행하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결과로 작성됨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②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3조 및 제23조의2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계열회사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 4. 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 또는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은 당시 제9조 제1항·제3항 또는 제10조의2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1999. 12. 28., 2001. 1. 16., 2002. 1. 26., 2005. 3. 31., 2009. 3. 25., 2017. 4. 18.>

1.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새로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제9조 (相互出資의 禁止등)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년간은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제 <2009. 3. 25.>

3. 제10조의2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새로 系列會社로 編入되어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2년간은 같은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보증에 한하여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의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는 같은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⑤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다)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8. 2. 24., 2002. 1. 26., 2004. 12. 31., 2016. 3. 29., 2017. 4. 18.> [제목개정 2017. 4. 18.]

○ 채무보증 현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5를 근거로 수행하고 있는 채무보증 현황 정보공개의 결과로 작성됨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 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0., 2002. 1. 26., 2009. 3. 25., 2017. 4. 18.> ②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보증 현황을 국내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2. 12. 8., 1996. 12. 30., 2002. 1. 26., 2017. 4. 18.> ③제12조 제11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 12. 30., 2001. 1. 16. 2004. 12. 31., 2012. 3. 21.> 제14조의5(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일반현황, 지배구조현황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출자, 채무보증, 거래관계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공개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의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작성방법

○ 기업집단 지정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대상 기업집단 선별 → 공문 발송 → 1차 자료 제출 → 검토 → 2차 자료 최종 제출 → 지정자료 최종 검토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 지정결과 발표
- 보도자료 배포 후 KOSIS 및 e-나라지표에 통계자료 작성

○ 채무보증 현황

-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채무보증 자료 제출 공문 발송 → 자료 제출 → 채무보증현황 공개
- 보도자료 배포 후 KOSIS 및 e-나라지표에 통계자료 작성

4. 통계작성기관/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집단정책과

5. 작성 및 공표주기

○ 작성주기 : 1년

○ 공표주기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5월, 채무보증 현황 12월

6. 통계작성과정 개관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 일정별 수행 업무

시기	내용	주체
2월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계획 수립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대상 선별 후 자료제출 공문 발송	공정거래위원회
3월	- 1차 지정 자료 제출	기업집단
	- 1차 지정 자료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4월	- 2차 지정 자료 제출	기업집단
	- 2차 지정 자료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5월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 채무보증 현황 공개

○ 일정별 수행 업무

시기	내용	주체
11월-12월	- 채무보증현황 공개 계획 수립 - 기업집단에 채무보증 변동 현황 요청	공정거래위원회
	- 채무보증 변동 현황 제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금융기관에 채무보증 현황 확인 요청 - 채무보증 현황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7. 통계연혁

□ 최초승인일자: 2006년

□ 연혁

○ 1987-2001년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합계액 순위 기준으로 30위까지 지정

○ 2002년부터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구분하여 지정

○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지정

○ 기존 2개의 통계조사(대규모기업집단채무보증현황, 대규모기업집단현황)에 대해 통계청 통계종합정비 계획(통계청 통계협력과-2120(2009.7.6.)호 “2009년 국가승인통계종합정비 시행계획알림”)에 의거 “대기업집단 지정 및 채무보증현황” 명칭으로 변경 승인

○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5조원→10조원으로 상향, 공기업집단 제외

○ 통계 작성 기준 시점 및 실시기간 변경(통계청 고시 제2017-88호)

○ 2017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그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

□ 개발배경

○ 기업집단지정 및 채무보증 현황을 통계로 작성하고 이를 공표함으로써 국민들의 정보 활용 편의성 제고

Ⅱ.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1. 통계의 작성목적

□ 목적

○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통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 및 사익편취행위 금지 등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을 확정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한 결과를 작성한 국가승인통계로서,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이며 해당정보를 시장에 공개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및 경영행태 개선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 주된 활용 분야

○ 대규모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수립 및 연구
○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통계자료 제공
○ 기업집단포털(egroup.go.kr)에서 통계자료 제공
○ e-나라지표에서 통계자료 제공
○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 주식소유현황, 내부거래현황, 지배구조현황 등

□ 관련 통계에 대한 사전 검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근거한 결과를 공개하는 통계로서 유사 통계가 없음

2. 주요 이용자 및 용도

□ 주요 이용자와 유형별 용도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 중앙행정기관에서 고용보험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 수립시 활용
○ 학계 및 연구기관에서 기업집단 기준 연구 및 기업집단에 대한 시책의 효과성 검토에 활용

3. 이용자 의견수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면 개편 기업집단분과 토론회

○ 기업집단법제 전면개편 방안
- 지정기준 개편방안 (공정거래법제개편 특별위원회 위원, 경북대교수 신영수, 2018.7.6.)
- 지정기준 지표 재정립(GDP연동, 자산총액 상향 등), 기업집단 이분화 유지 여부
- 현행 자산규모 기준 유지 합의

Ⅲ. 통계설계

1. 보고양식 설계

1-1. 개념 및 정의

□ 통계 주요 용어 및 정의

개념	정의
기업집단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 -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계열회사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를 지칭
채무보증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금융기관(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중소기업은행, 보험회사 등)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
공시대상 기업집단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 주요 입력항목 및 항목별 정의

항목	설명
소속회사 개요	- 소속회사의 일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입력 (회사명, 법인번호, 법인설립일, 재무현황 등)
친족현황	- 기업집단 동일인의 혈족 6촌, 인척 4촌의 인적사항을 입력(이름,생년월일)
임원현황	- 소속회사의 임원 인적사항을 입력(이름, 생년월일, 직위, 경력)
주주현황	- 소속회사의 주주현황을 입력(주주명, 소유주식수, 비율 등)
비영리법인단체	- 공정거래법 시행령 상 동일인관련자에 속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 입력 (법인명, 법인번호, 설립일 등)
비계열회사 보유주식 현황	- 소속회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해당회사의 15% 이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입력(피출자회사명, 주주 목록, 등)
채무보증명세서	- 소속회사 간 채무보증이 있는 경우 입력(보증한 회사, 금융기관명, 보증금액 등)

1-2. 적용 분류체계

□ 분류체계

- 소속회사 개요에 입력되어 있는 회사의 자산을 합산하여 5조원 이상인 경우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그 중 10조원 이상인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

1-3. 보고양식 구성

□ 보고양식

○ 보고양식이 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수정사항이 필요한 경우 기업집단포털 내에서 입력방식을 수정하여 보고양식을 구성

소속회사 개요

저장

소속회사목록 총 14건

		사업자...	소속회사명
1		12481009	삼성전자(주)
2		44444444	123123
3		미등록	12312312
4		44444444	123123123123
5		44444444	213123
6		미등록	222
7		12312312	aaaaa
8		미등록	dkdkdk
9		미등록	ㄱ12ㅇ12ㅇ12ㅇ
10		미등록	미등록업체입니다요.;
11		44444444	사업자 번호 없는 기업
12		미등록	삼성바이오로직스(주)
13		미등록	테스트1_농업_일반&
14		68781003	테스트3_더블_금융111%'

소속회사 개요 ※소속업체 등록 후 법인등록번호는 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등록 전 한번 더 확인하세요.

* 법인등록번호	1301110006246	* 사업자등록번호	
* 소속회사명	삼성전자(주)	영위업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 금융여부	일반	대표자	
설립일자	1988/01/01	계열편입일	1969/01/13
결산기일	2017/12/31	직전주총일	2018/03/23
기업공개일	1975/06/30	회사분류	일반회사
종업원수	94,470 명	담당자 전화번호	031-277-5331
내부거래비중	1 %		
지주회사구분	해당없음	해당지주회사	해당사항없음

직전사업년도 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자산총액	198,241,360	자본총액	151,569,775
부채총액	46,671,585	자본금	897,514
매출액	161,915,007	영업이익	34,857,091
경상이익	28,800,837	당기순이익	28,800,837

1-4. 보고양식 변경 절차 및 변경 이력

□ 변경이력

변경승인일자	내역
2006.8.22	통계 작성 협의 요청
2009.5.18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통계작성변경승인신청
2009.12.10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통계작성변경승인신청 -통계청 통계협력과-2120(2009.7.6.)호 “2009년 국가승인통계종합정비 시행계획알림” 에 의거 통합
2010.12.28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통계 결과 제출
2012.6.25	국가승인통계 DB현행화를 위한 보완자료 반영
2012.10.29	조사표 첨부파일 협의기관 일괄 변경
2017.3.30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통계작성변경승인신청-작성기준시점 변경(법령 개정)

2. 보고대상 및 통계작성대상

□ 보고대상과 통계작성대상

○ 보고대상: 자산총액 2조 이상 기업집단, 누적 출자약정금액 1조원 이상 PEF 보유집단

○ 통계작성대상 :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작성기간 내 통계작성대상의 변동 발생 여부

○ 변동없음

3. 통계작성 개편

□ 통계 개편을 위한 내용

- 기업집단포털(https://www.egroup.go.kr/)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기업집단 지정자료 입력 및 제출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기업집단 관련 통계 정보를 총괄적으로 제공

Ⅳ. 자료수집

1. 자료수집 체계 및 절차

□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체계 및 절차

○ 자료수집 체계

기업집단지정 계획 수립 → 지정 가능 기업집단 선정 → 공문 발송 → 1차 자료 제출 →검토 및 각 기업집단에 수정 요청 → 2차 자료 제출 → 검토

○ 절차

시기	내용	주체
2월	-기업집단지정 계획 수립 -기업집단 지정자료 요청 공문 발송 (자산총액 3.5조 이상 기업집단에 1차 정식자료제출 요청)	공정거래위원회
3월	-1차 정식 자료 제출 (소속회사 개요, 친족현황, 임원현황, 주주현황, 비영리법인단체 출자자현황 임원현황, 비계열회사 보유주식 현황)	기업집단
4월	-1차 정식 자료 검토 -2차 정식 자료 제출 요청	공정거래위원회
	-2차 정식 자료 제출	기업집단
	-2차 정식 자료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5월	-지정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11월	-채무보증 현황 공개 계획 수립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상 채무보증 현황 자료 제출 공문	공정거래위원회
12월	-채무보증 현황 자료 제출	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확인 요청	공정거래위원회
	-채무보증 현황 확인	금융회사
	-채무보증 현황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 전산입력, 오류점검, 집계 자료 등의 과정

○ 각 기업집단 별 소속회사의 법인등록번호를 분류값으로하여 회사가 중복 작성하지 않도록 함

- 대표회사가 소속회사를 미리 등록하고 소속회사의 담당자가 권한을 부여 받는 형태로 구성되어 소속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일차적으로 대표회사가 검토하고 제출하는 형태

○ 매뉴얼대로 입력하였는지 제출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종 검토

2. 자료수집을 위한 교육

□ 보고 담당자 대상 정기 교육

○ 매년 기업집단 소속회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료 입력 관련 교육 실시

- 대기업집단 정책 설명회 (2019.5.7. 실시)

시간(분)	내용
10:00~11:00(60)	대기업집단시책 설명
11:00~13:00(120)	기업집단현황 공시 설명
14:00~16:00(120)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설명
16:00~17:00(60)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설명

3. 현장관리

□ 보고 완료시점 미준수에 따른 조치절차 및 방안

○ 기업집단 지정일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4항에 따라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로 기준일 미준수 가능성이 낮음

□ 기입요령 및 유의사항

○ 소속회사 개요 작성시 법인등록번호 필수적 입력

- 법인등록번호가 나오지 않은 경우 발급 후 작성

○ 비계열사 보유 주식 현황 작성시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기재

- 동일인의 친족 및 소속회사 임원이 보유한 주식현황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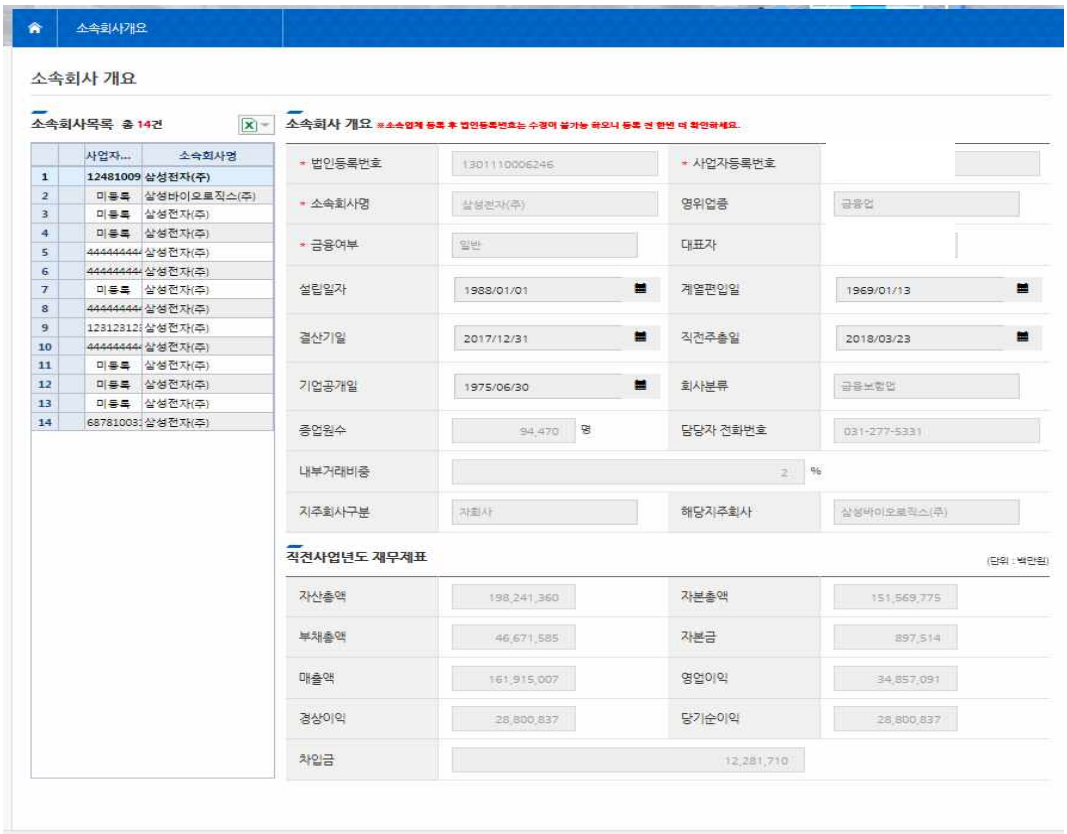
○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것, 회계법인의 서명 또는 인감이 날인된 것으로 제출

○ 각 기업집단의 대표회사 또는 소속회사의 업종 코드 및 금융여부 확인

- 표준산업분류 참조

○ 현재 등기 상태와 다르더라도 지정일(5월 1일)기준으로 작성

○ 소속회사 개요 견본



□ **주요 질의 응답**

○ 같은 사항에서 질의가 중복으로 들어오는 경우, 매뉴얼 및 시스템 입력방법을 수정

□ **보고 양식 중 미기재, 부실기재 등이 있는 경우 회사 측에 재입력 하도록 요청**

○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67조 벌칙 조항에 의해 처리

Ⅴ. 자료처리

1. 자료입력 표준화

□ 전산입력 방법, 오류검출을 위해 적용한 방법

○ 전산입력 방법

- 기업집단 담당자(대표회사/소속회사)가 기업집단포털에 가입하여 자료 제출
- 대표회사 및 소속회사의 구분은 법인등록번호로 가능

○ 오류검출 방법

- 기업집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매뉴얼대로 입력하였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
- 직전년도 자료 및 신용평가기업정보(NICE)를 활용하여 기업정보 등 오류 입력 최소화

○ 입력 매뉴얼

- 첨부2, 첨부3

○ 자료 입력방법 교육

- 교육 날짜 : 기업집단 지정 (1.10), 지주회사(1.24)
- 교육 방법 : 집합교육

2. 자료내검

□ 개별자료 중 중복, 누락 등에 대한 확인 및 보완 방안

○ 기업집단 별 대표회사의 법인등기번호 입력 후 대표회사에서 소속회사의 법인등기번호를 입력하여 자체적으로 소속회사 개요 작성

- 법인등기번호로 회사를 구분함으로써 중복입력 되는 경우는 없음
- 회사가 입력한 자료는 기업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을 대조하여 전수검사를 함으로써 확인 및 보완

3. 무응답

□ 무응답률

○ 기업집단 지정 및 채무보증에 대한 자료제출은 공정거래법상 의무이므로 100% 응답

- 필수 항목이 지정되어 있어 필수 항목 미입력 시 최종 자료 제출이 불가

4 이상치 식별 및 처리

□ 이상치 처리

○ 정해진 자료에 대한 이상치는 존재하지 않음

Ⅵ. 통계공표 및 품질평가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 기업집단 지정 보도자료(2018년)

○ 보도자료에 주요 통계 내용 기술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8년 4월 30일(월) 배포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
	담당과장: 육OO(044-200-4842)
2018년 5월 2일(수)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5월 1일(화) 낮 12시	담당: 김OO 사무관(044-200-4852) 신OO 조사관(044-200-4845) 한OO 조사관(044-200-4848)

공정위, 60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 '삼성'·'롯데' 의 동일인 변경, '네이버' 에 편입된 임원 독립 경영회사 계열 분리 -

- 재무 상태 개선 뚜렷, 매출액·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부채 비율은 5년 연속 하락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OO, 이하 공정위)는 2018년 5월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60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083개)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 공시 대상 기업집단 수는 전년(57개)대비 **3개가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전년(1,980개) 대비 103개 증가했다.

* '메리츠금융'(자산총액 6.9조 원), '넷마블'(5.7조 원), '유진'(5.3조 원)이 신규 지정

■ 공정위는 같은 날 공시 대상 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인 32개 집단(소속회사: 1,332개)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수는 전년(31개)대비 1개가 증가*하였고 소속회사 수는 전년(1,266) 대비 66개 증가했다.

* '교보생명보험'(자산총액 10.9조 원)·'코오롱'(10.8조 원)이 신규 지정되고 '대우건설'(9.7조 원)이 지정 제외함.

ㅇ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이하 법)상 공시 및 신고 의무*가 부과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법 제23조의2)가 적용됨.

* 기업집단현황공시(법 제11조의4), 대규모내부거래공시(법 제11조의2),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법 제11조의3), 주식소유현황 신고(법 제13조)

ㅇ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하여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조항 외에 상호출자금지(법 제9조), 순환출자금지(법 제9조의2), 채무보증금지(법 제10조의2),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법 제11조) 등이 추가적으로 적용됨.

■ 공정위는 그간 경직적으로 운영되어온 지정 제도가 **경영 현실**을 반영하고 **대기업집단 시책의 취지**에 충실히 부합하도록 보완하여 이번 지정을 실시했다.

ㅇ 우선, 대기업집단 시책의 기준점이 되는 동일인의 확정과 관련, 각 집단별 동일인의 경영 실태를 조사하여,

- 동일인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삼성'· '롯데'에 대해 경영 현실과 공정거래법령(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인물로 **동일인을 변경**하기로 했다.

* '오씨아이'의 경우 2017년 10월 동일인의 사망으로 동일인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이번 지정에서 동일인을 변경함.

ㅇ 또한, 올해 4월 17일 시행령 개정으로 **임원 독립 경영** 인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업집단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번 지정에 반영했다.

- '네이버'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당시 소속 임원이 해당 기업집단과 별도로 경영해왔음에도 편입되었던 휴맥스계 계열회사에 대해 심사를 거쳐 계열 분리를 인정했다.

■ 한편, 이번 지정 결과 대기업집단의 재무 상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오고 있으며, 특히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최근 5년간 자산 총액 5조 이상 기업집단의 재무 현황 및 경영 성과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증감('17→18)
자산(조원)	1,596.3	1,646.3	1,753.6	1,842.1	1,966.7	124.6
부채비율(%)	83.6	81.4	79.6	76.0	71.2	△4.8
매출액(조원)	1,357.3	1,324.5	1,233.8	1,233.4	1,359.5	126.1
당기순이익(조원)	50.4	40.5	49.5	53.8	100.2	46.4

■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공시 대상 기업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여 시장 감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지정 집단의 주식 소유 현황 등을 분석하여 내부 지분율 등 소유 구조를 공개하고, 단계적으로 내부거래 현황, 채무 보증 현황, 지배 구조 현황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

1 지정 개요

□ 2018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60개로 전년 9월 1일(57개) 대비 3개 증가했다.

< 공시 대상 기업집단 신규 지정 사유 >

구분	기업집단	사 유
신규 지정(3)	메리츠금융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유상증자(약 1.2조) 및 메리츠캐피탈 유상증자(약 0.2조)에 따른 자금 유입
	넷마블	넷마블㈜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따른 자금 유입(약 2.7조)
	유진	유진저축은행(舊현대저축은행)인수 및 유진기업 실적개선에 따른 자산증가

○ 공시 대상 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집단은 전년 대비 3개 증가(49개→52개)했고, 총수없는 집단은 변화가 없었다.(8개)

< 기업집단별 총수 유무 현황 >

총수있는 집단(52개)	총수없는 집단(8개)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지에스,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 한진, 씨제이, 부영, 엘에스, 대림, 미래에셋, 현대백화점, 영풍, 한국투자금융, 금호아시아나, 효성, 오씨아이, 케이씨씨, 교보생명보험, 코오롱, 하림, 중흥건설, 한국타이어, 태광, SM, 셀트리온, 카카오, 세아, 한라, 이랜드, DB, 호반건설, 동원, 현대산업개발, 태영, 아모레퍼시픽, 네이버, 동국제강, 메리츠금융, 넥슨, 삼천리, 금호석유화학, 한진중공업, 넷마블, 하이트진로, 유진, 한솔,	**포스코, 농협, 케이티, 에쓰-오일, 대우조선해양, 케이티앤지,** 대우건설, 한국지엠

* 굵은글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2018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32개로 전년 5월 1일(31개) 대비 1개 증가했다.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사유 >

구분	기업집단	사 유
신규 지정(2)	교보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이 만기보유금융자산(29.7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함에 따라 평가방법이 변경(원가법→공정가치법)되어 장부금액이 1.8조 원 증가
	코오롱	코오롱인더스트리 국내외 생산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투자
제외(1)	대우건설	㈜대우건설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부채 상환(약 1.4조)으로 자산 감소

<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 >

[단위: 개, 조 원]

'18	'17	기업집단명	동일인	소속회사수		자산총액(공정자산)	
				'18	'17	'18	'17
1	1	삼성	이재용	62	62	399.5	
2	2	현대자동차	정몽구	56	53	222.7	
3	3	에스케이	최태원	101	96	189.5	
4	4	엘지	구본무	70	68	123.1	
5	5	롯데	신동빈	107	90	116.2	
6	6	포스코	(주)포스코	40	38	79.7	
7	7	지에스	허창수	71	69	65.0	
8	8	한화	김승연	76	61	61.3	
9	10	농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9	81	58.1	50.8
10	9	현대중공업	정몽준	28	29	56.1	
11	11	신세계	이명희	39	37	34.1	
12	12	케이티	(주)케이티	36	38	30.7	
13	13	두산	박용곤	26	26	30.5	
14	14	한진	조양호	28	34	30.3	
15	15	씨제이	이재현	80	70	28.3	
16	16	부영	이중근	24	22	22.4	
17	17	엘에스	구자홍	48	45	21.0	
18	18	대림	이준용	27	26	18.7	
19	22	에쓰-오일	에쓰-오일(주)	3	2	15.2	14.0
20	21	미래에셋	박현주	38	41	15.0	15.2
21	23	현대백화점	정지선	28	29	14.3	13.4
22	26	영풍	장형진	24	23	12.3	11.0
23	20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주)	5	14	12.2	15.3
24	28	한국투자금융	김남구	30	28	12.0	10.7
25	19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26	28	11.9	15.6
26	25	효성	조석래	52	46	11.7	11.5
27	24	오씨아이	이우현	21	22	11.3	11.8

'18	'17	기업집단명	동일인	소속회사수		자산총액(공정자산)	
				'18	'17	'18	'17
28	27	케이티앤지	(주)케이티앤지	9	9	11.0	10.8
29	31	케이씨씨	정몽진	17	7	11.0	10.5
30	34	교보생명보험	신창재	14	14	10.9	8.9
31	32	코오롱	이웅열	39	40	10.8	9.6
32	30	하림	김홍국	58	58	10.5	10.5
33	29	대우건설	(주)대우건설	15	14	9.7	10.7
34	35	중흥건설	정창선	61	62	9.6	8.5
35	33	한국타이어	조양래	17	17	9.1	8.9
36	44	태광	이호진	25	26	8.7	7.4
37	46	SM	우오현	65	61	8.6	7.0
38	49	셀트리온	서정진	9	11	8.6	6.8
39	50	카카오	김범수	72	63	8.5	6.8
40	39	세아	이순형	21	21	8.5	8.1
41	38	한라	정몽원	19	19	8.3	8.2
42	42	이랜드	박성수	30	29	8.3	7.5
43	36	DB	김준기	20	23	8.0	8.3
44	47	호반건설	김상열	42	48	8.0	7.0
45	37	동원	김재철	22	30	8.0	8.2
46	48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23	19	8.0	6.9
47	40	태영	윤세영	48	47	7.9	7.7
48	43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12	12	7.7	7.5
49	51	네이버	이해진	45	71	7.1	6.6
50	45	동국제강	장세주	10	9	7.0	7.1
51	신규	메리츠금융	조정호	8	-	6.9	-
52	56	넥슨	김정주	22	22	6.7	5.5
53	53	삼천리	이만득	17	17	6.5	6.0
54	41	한국지엠	한국지엠(주)	2	2	6.5	7.5
55	54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11	11	5.8	5.7
56	52	한진중공업	조남호	7	8	5.7	6.6
57	신규	넷마블	방준혁	26	-	5.7	-
58	55	하이트진로	박문덕	12	12	5.6	5.5
59	신규	유진	유경선	71	-	5.3	-
60	57	한솔	이인희	19	20	5.1	5.3
				2,083	**1,980**	**1,966.7**	**1,842**

※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1위~32위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

2 계열회사 수

1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전년 9월 1일 대비 103개 증가* (1,980개→2,083개)했고 평균 계열회사 수는 0.02개 감소(34.74개→34.72개)했다.

* 57개 기존 집단(-2개), 3개 신규 지정 집단(+105개)

○ 계열회사 수가 많이 증가한 집단은 '롯데'(+17개), '한화'(+15개), '케이씨씨'(+10개) 등이고,

* **(롯데)**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지분 취득으로 관련 회사 계열편입 **(한화)**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회사 인수 및 물적분할 **(케이씨씨)** 동일인의 친족보유회사 편입

- 많이 감소한 집단은 '농협'(-32개), '네이버'(-26개), '대우조선해양'(-9개) 등이다.

* **(농협)** 창명해운 지분매각으로 관련 회사 계열제외 **(네이버)** 휴맥스계 계열회사 임원독립경영 인정 **(대우조선해양)** 자구계획에 따른 계열사 청산 및 매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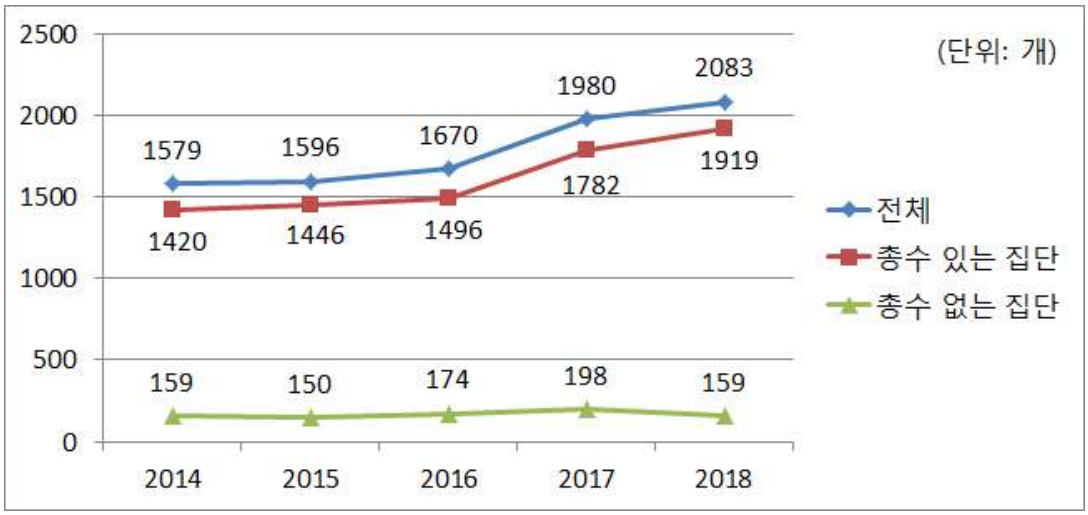
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전년 5월 1일 대비 66개 증가* (1,266개→1,332개)했고, 평균 계열회사 수는 0.8개 증가(40.8개→41.6개)했다.

* 30개 기존집단(+27개), 2개 신규 지정집단(+53개), 1개 지정 제외집단(-14개)

3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1]의 계열회사 수는 최근 증가 추세이다.

* **(2014년)** 1,579개 → **(2015년)** 1,596개 → **(2016년)** 1,670개 → **(2017년)** 1,980개 → **(2018년)** 2,083개

< 최근 5년간 계열회사 수 변동 추이 >



1) 2014년~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공기업집단 제외), 2017년~2018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이하 같음.

3 재무 현황

1. 자산 총액

□1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자산 총액은 전년 9월 1일 대비 124.6조 원 증가*(1,842.1조 원→1,966.7조 원)했고, 평균 자산 총액은 0.5조 원 증가(32.3조 원→32.8조 원)했다.

* 57개 기존집단(+106.6조 원), 3개 신규 지정집단(+17.9조 원)

○ 자산 총액 순위가 많이 상승한 집단은 '셀트리온'(49위→38위), '카카오'(50위→39위), 'SM'(46위→37위), '태광'(44위→36위) 등이고,

*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코스닥상장 **(카카오)** 케이큐브홀딩스 보유 상장회사 주식가치 상승 **(SM)** 경남기업 등 신규계열사 편입 및 선박 취득 **(태광)** 흥국생명 유상증자

- 많이 하락한 집단은 '한국지엠'(41위→54위), '동원'(37위→45위), 'DB'(36위→43위) 등이다.

* **(한국지엠)** 국내외 경기악화로 인한 판매 감소 **(동원)** 동원엔터프라이즈 보유 상장회사 주식 가치 하락 **(DB)** 동부대우전자 계열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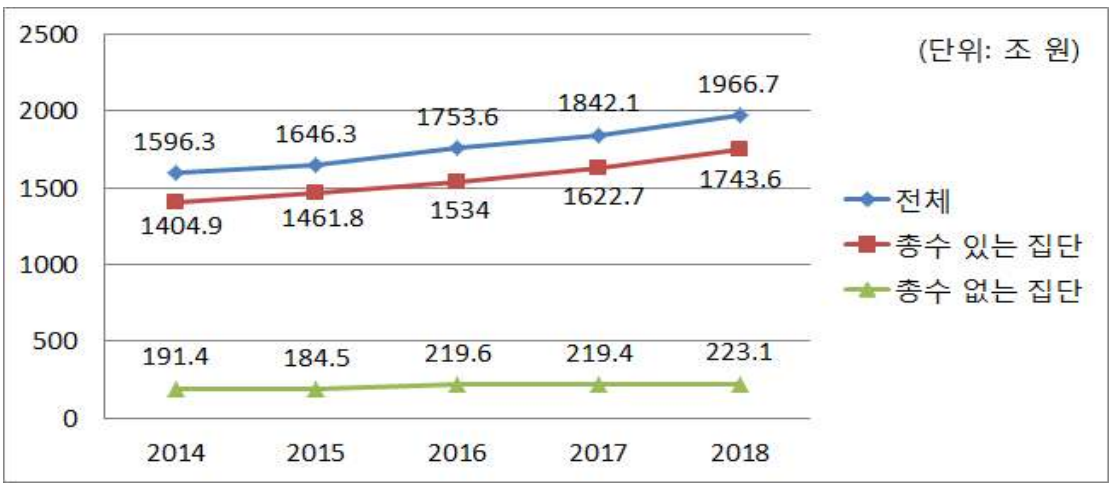
□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자산 총액은 전년 5월 1일 대비 104.4조 원 증가*(1,653.0조 원→1,757.4조 원)했고, 평균 자산 총액은 1.6조 원 증가(53.3조 원→54.9조 원)했다.

* 30개 기존집단(+93.4조 원), 2개 신규 지정집단(+21.7조 원), 1개 지정 제외집단(-11.3조 원)

□3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자산 총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2014년)**1,596.3조 원→**(2015년)**1,646.3조 원→**(2016년)**1,753.6조 원→**(2017년)**1,842.1조 원→**(2018년)**1,966.7조 원

< 최근 5년간 자산총액 변동 추이>



2. 부채 비율[2](*금융·보험업 제외)

□1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부채 비율은 전년 9월 1일 대비 4.8%p 감소*(76.0%→71.2%)했다.

* 57개 기존집단의 부채 비율은 전년 대비 4.6%p 감소(76.0%→71.4%)함.

○ 부채 비율이 많이 감소한 집단은 '대우조선해양'(-2,492.4%p), '한진'(-207.0%p), '대우건설'(-75.4%p) 등이고,

*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유상증자로 자본금 증가 **(한진)** 대한항공 부채감소 및 자본증가 **(대우건설)** 대우건설 대규모 차입금 상환에 따른 부채감소

- 많이 증가한 집단은 '한진중공업'(+53.8%p), '농협'(+52.0%p), '금호아시아나'(+44.9%p) 등이다.

*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 손익악화로 자본금 감소 **(농협)** 경제지주가 농협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 부문을 현물출자 받아 부채증가 **(금호아시아나)** 부채비율 낮은 금호타이어 계열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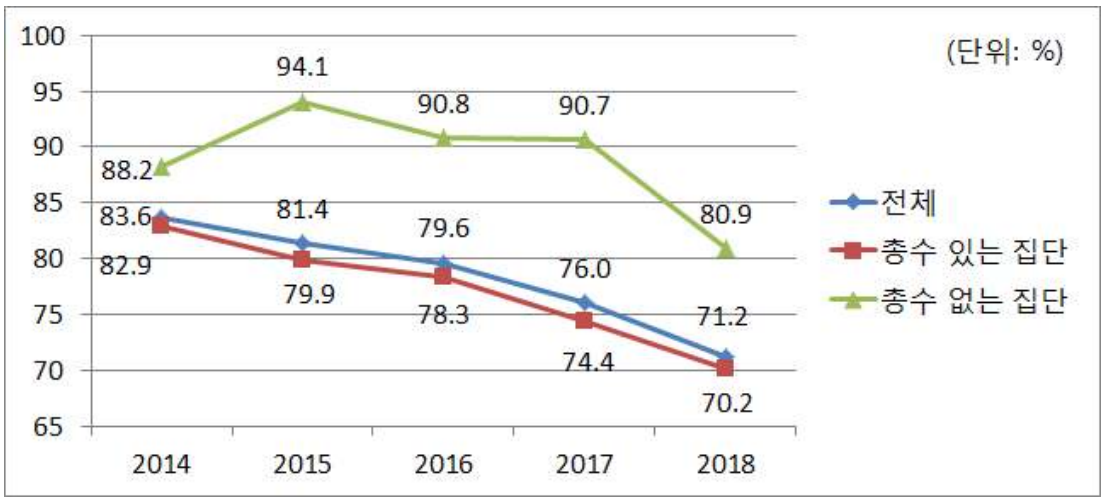
□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부채 비율은 전년 5월 1일 대비 4.4%p 감소*(73.9%→69.5%)했다.

* 30개 기존집단의 부채 비율은 전년 대비 3.9%p 감소(73.0%→69.1%)함.

□3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부채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 **(2014년)** 83.6% → **(2015년)** 81.4% → **(2016년)** 79.6% → **(2017년)** 76.0% → **(2018년)** 71.2%

< 최근 5년간 그룹별 부채 비율 변동 추이 >



2) 부채 비율: 기업집단 중 비금융·보험 전체의 자본총액 대비 전체 부채 총액으로 계산함.

4 경영 성과

1. 매출액 현황(*금융·보험업 제외)

□1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총 매출액은 전년 9월 1일 대비 126.1조 원 증가*(1,233.4조 원→1,359.5조 원)했고, 평균 매출액은 1조 원 증가(21.6조 원→22.7조 원)했다.

* 57개 기존집단(+121.9조 원), 3개 신규 지정집단(+4.1조 원)

○ 매출액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삼성'(+34.6조 원), '에스케이'(+32.2조 원), '엘지'(+12.8조 원) 등이고,

* **(삼성, 에스케이)** 반도체 판매호조 **(엘지)** 가전, 석유화학, LCD패널 등 주력사업 판매호조

- 많이 감소한 집단은 '롯데'(-2.2조 원), '대우조선해양'(-2.1조 원), '금호 아시아나'(-2.1조 원) 등이다.

* **(롯데)** 롯데쇼핑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매출 감소 **(대우조선해양)** 조선업계 불황 및 계열사 감소 **(금호아시아나)** 금호타이어 계열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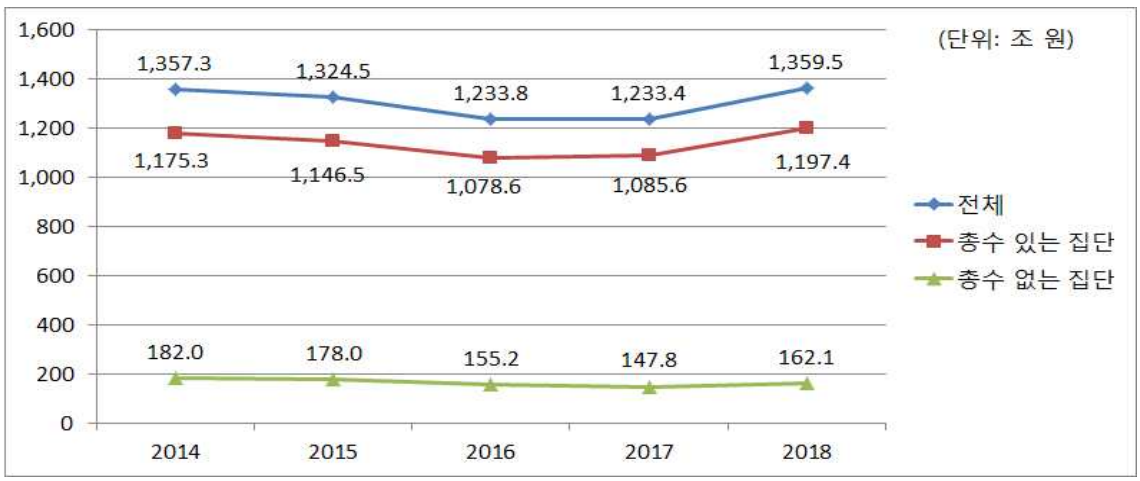
□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총 매출액은 전년 5월 1일 대비 111.6조 원 증가*(1,116.3조 원→1,227.9조 원)했고, 평균 매출액은 2조 원 증가(36.0조 원→38.4조 원)했다.

* 30개 기존집단(+113.0조 원), 2개 신규 지정집단(+9.9조 원), 1개 제외 집단(-10.7조 원)

□3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매출액은 감소하다가 올해 크게 증가*했다.

* **(2014년)**1,357.3조 원→**(2015년)**1,324.5조 원→**(2016년)**1,233.8조 원→**(2017년)**1,233.4조 원→**(2018년)**1,359.5조 원

< 최근 5년간 매출액 변동 추이 >



2. 당기순이익 현황 (*금융·보험업 제외)

□1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총 당기순이익은 전년 9월 1일 대비 46.4조 원 증가* (53.8조 원→100.2조 원)했고, 평균 당기순이익은 0.72조 원 증가(0.94조 원→1.67조 원)했다.

* 57개 기존집단(+46.0조 원), 3개 신규 지정집단(+0.4조 원)

○ 당기순이익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삼성'(+19.4조 원), '에스케이' (+10.5조 원), '엘지'(+4.5조 원) 등이고,

* **(삼성, 에스케이)** 반도체 판매호조 **(엘지)** 가전, 석유화학, LCD패널 등 주력사업 판매호조

- 많이 감소한 집단은 '현대자동차'(-3.8조 원), '부영'(-0.6조 원), '한국지엠' (-0.5조 원) 등이다.

* **(현대자동차)** 원화강세 및 중국 등 해외법인 실적 악화 **(부영)** 부영주택의 분양전환 수익 감소 **(한국지엠)** 국내외 경기악화로 인한 판매감소 및 비용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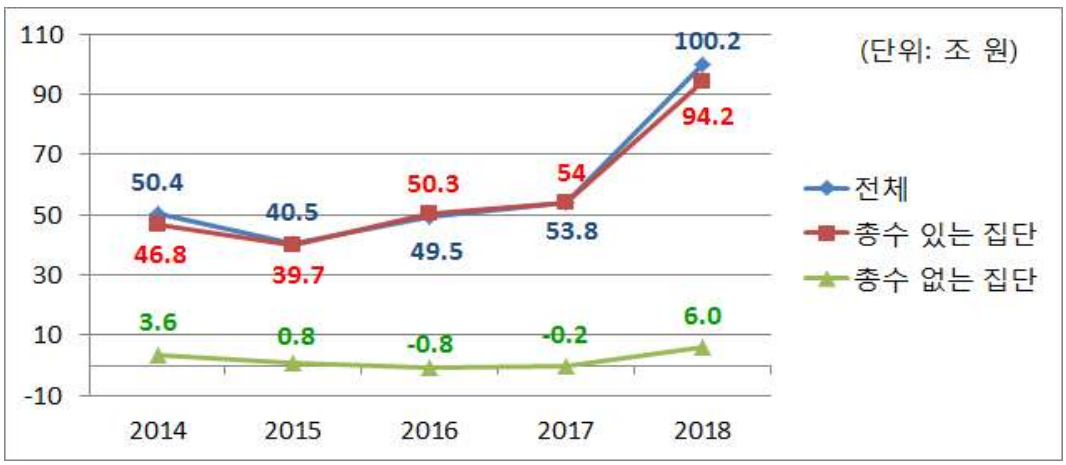
□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총 당기순이익은 전년 5월 1일 대비 42.9조 원 증가*(48.6조 원 → 91.5조 원)했고, **평균 당기순이익**은 **1.3조 원 증가**(1.6조 원 → 2.9조 원)했다.

* 30개 기존집단(+42.0조 원), 2개 신규 지정집단(+0.1조 원), 1개 제외 집단(+0.8조 원)

□3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당기순이익은 2015년 하락 후 2016년에 다시 증가 추세로 반전한 뒤 2018년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 **(2014년)** 50.4조 원→**(2015년)** 40.5조 원→**(2016년)** 49.5조 원→**(2017년)** 53.8조 원→**(2018년)** 100.2조 원

<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변동 추이 >



5 올해 지정 결과의 특징

1 경영 현실과 대기업집단시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정 제도 운영

○ **(동일인 변경)** 동일인은 대기업집단 시책의 기준점이 되는 만큼 세밀한 실태조사를 거쳐 기업집단의 경영 현실을 반영하고 공정거래법상 기준에도 부합하는 인물로 동일인을 확정했다.

- 올해 지정에 앞서 동일인의 경영 실태 조사(1차: 1월 25일~2월 9일, 2차: 4월 4일~4월 13일)를 실시한 결과 일부 집단에서 동일인 변경 필요성이 파악되어 법령상 동일인 기준에 관한 심층 검토*를 거쳐 기존 동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 동일인 개념이 추론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규정(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회사법 분야의 외부전문가(4인)의 자문을 거쳤다.

- '삼성'과 '롯데'의 경우 종전 동일인을 변경하여야 할 중대·명백한 사유*가 존재하고 동일인을 각각 이재용과 신동빈으로 변경할 경우 계열 범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동일인을 변경했다.

* 종전 동일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종전 동일인 이외의 인물이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집단 내 임원변동· 조직 변경 등 지배 구조의 변화가 나타남.

○ **(임원 독립 경영 인정)**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임원이 독립적으로 운영해오던 회사에 대하여 계열 분리를 인정했다.

- 올해 4월 17일 시행령 개정으로 임원 독립 경영 인정 제도가 도입· 시행된 이후 '네이버' 측에서 최초로 휴맥스계 계열회사에 대한 독립 경영을 신청하였는 바,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계열 분리를 인정했다.

* 임원이 선임되기 이전부터 소유·지배하던 회사로서 동일인 측 계열회사와 임원 측 계열회사 간 출자, 채무보증, 자금대차, 임원겸임이 없고 거래의존도가 50% 미만일 것

2 대기업집단 전반적으로 재무 상태 · 경영 성과가 개선되는 가운데 상·하위 집단 간 격차가 확대

○ 공시 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전년 대비 부채 비율 등 재무 현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고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대폭 증가했다.

< 공시 대상 기업집단 재무 현황 및 경영 성과 변화 >

[단위: 조 원, %]

구분		계열사 수	자산	부채비율	매출액	당기순이익
공시대상 기업집단	´17	1,980 (1,980)	1,842.1 (1,842.1)	76.0 (76.0)	1,233.4 (1,233.4)	53.8 (53.8)
	´18	2,083 (1,978)	1,966.7 (1,948.7)	71.2 (71.4)	1359.5 (1,355.3)	100.2 (99.8)
	증감	**103 (△3)**	**124.6 (106.6)**	**△4.8%p (△4.6)**	**126.1 (121.9)**	**46.4 (46.0)**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17	1,266 (1,252)	1,653.0 (1,642.3)	73.9 (73.0)	1,116.3 (1,105.0)	48.6 (49.4)
	´18	1,332 (1,279)	1,757.4 (1,735.6)	69.5 (69.1)	1,227.9 (1,218.0)	91.5 (91.4)
	증감	**66 (27)**	**104.4 (93.3)**	**△4.4%p (△3.9)**	**111.6 (113.0)**	**42.9 (42.0)**

* 괄호 안은 2년 연속 지정된 집단의 현황임

○ 상위 5개 집단이 60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전체에서 자산 53.4%, 매출액 56.7%, 당기순이익 67.2%를 차지하는 등 집단 간 격차가 현저한 상태이다.

* 작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중 상위 5개 비중 : 자산(53.0%), 매출액 (56.2%), 당기순이익(70.5%)

< 전체 공시 대상 기업집단(60개)에서 차지하는 비중 >

[단위: %]

구분	자산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상위 5개 집단	**53.44**	**56.74**	**67.16**
상위 10개 집단	69.72	72.34	81.21
상위 32개 집단	89.36	90.32	91.26
하위 28개 집단	10.64	9.68	8.74

- 또한, 자산 대비 경영 성과(매출액·당기순이익)도 상위 집단일수록 높아 상·하위 집단 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기업집단별 자산 대비 경영 성과 >

[단위: 조 원]

구분	평균자산(A)	평균매출액(B)	B/A	평균당기순이익(C)	C/A
상위 5개 집단	210.2	154.3	**0.734**	13.5	**0.064**
상위 10개 집단	137.1	98.3	**0.716**	8.1	**0.059**
상위 32개 집단	54.9	38.4	**0.699**	2.9	**0.053**
하위 28개 집단	7.5	4.7	**0.626**	0.3	**0.042**

6 향후 계획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공시 대상 기업집단과 관련된 현황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여 **시장과 이해 관계자에 의한 감시** 기능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지정 집단의 계열회사 전체에 대한 소유 지분 및 출자 현황 등을 분석하여 내부 지분율 등 소유 구조를 공개하고,

- 내부거래 현황, 채무 보증 현황, 지배 구조 현황 등도 단계적으로 분석하여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 시의성 및 정시성

2-1. 통계작성/보고대상 기준시점과 공표시기

□ **보고대상 시점과 공표시기**

○ 통계작성 기준시점: 매년 5월 1일

○ 공표시기: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 15일까지 연장 가능)

2-2. 공표일정

□ **공표일정과 공표시기**

○ 공표일정

- 매년 5월1일에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집단 지정 현황 공개
 * https://www.egroup.go.kr
- 매년 5월 31일 e-나라지표에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현황 공개
- 매년 12월에 보도자료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공개
- 국가통계포털(KOSIS)에 대기업집단지정 및 채무보증 현황 공개
- 매년 12월 e-나라지표에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현황 공개
- 국가통계포털(KOSIS)에 대기업집단지정 및 채무보증 현황 공개

□ **최근 공개일정 및 실제 공표시기**

○ 2019년 5월 15일 보도자료 발표, 2019년 5월 31일 e-나라지표에 공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현황

영역별 : 경제 > 성장과 안정 > 기타
부처별 : 국무총리직속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그래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자료)

주석

*1987 년~2001 년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합계액 순위 기준으로 30 위까지 지정
*2002 년부터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구분하여 지정
*2009 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지정
*2016 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5 조원->10 조원으로 상향하고, 공기업집단을 제외
*2017 년 4 월 법 개정에 따라 자산총액 5 조원 이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그 중 자산총액 10 조원 이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공시대상기업집단 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크림)

채무보증 현황

영역별 : 경제 > 성장과 안정 > 기타
부처별 : 국무총리직속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그래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자료)

주석

* 2003 년 49 개, 2004 년 51 개, 2005 년 55 개 2006 년 59 개, 2007 년 62 개, 2008 년 41 개, 2009 년 48 개, 2010 년 53 개, 2011 년 55 개, 2012 년 63 개,2013 년 62 개, 2014 년 63 개, 2015 년 61 개, 2016 년 27 개, 2017 년 31 개('16.9.30 집단지정기준 상향), 2018 년 32 개

통계표명 : 채무보증 현황

[단위 : 조원, %]

채무보증 현황 통계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채무보증금액 총계	1.70	1.50	3.00	1.70	1.10	0.70	2.06	0.32	0.29	0.26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	0.50	0.40	1.90	0.90	0.40	0.10	1.80	0.01	0.12	0.12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	1.20	1.10	1.10	0.80	0.70	0.60	0.46	0.31	0.17	0.14

3. 비교성

3-1.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 통계작성방법 비교

○ 분류기준 변화

- 기존에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으나, 국민경제 규모 및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조원 이상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그 중 자산총액이 10조 이상인 곳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

○ 보고시기 변화

- 4월 1일에서 5월 1일로 변경

3-2. 시계열 비교성

□ 시계열 단절 유무

○ 통계의 시계열 단절 없음

3-3. 국가간 비교성

□ 주요 국가의 통계 : 동일한 목적의 통계 없음

○ 미국

- 미국의 기업법은 단순히 기업집단임을 근거로 하는 규제 부재

○ 독일

-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은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로 기업집단에 대한 간접규제

4 일관성

4-1. 동일영역 통계와 일관성

□ 동일한 조사내용 또는 보고항목이 포함된 다른 통계 없음

4-2. 작성주기 차이에 의한 통계의 일관성

□ 동일한 내용에 대한 작성주기가 다른 통계 존재하지 않음

4-3. 잠정치와 확정치의 일관성

□ 잠정치를 공표하는 통계 없음

5. 일회성 수정

□ 수정 내역

내용	사유	조치 과정
금융 비금융 내역 변경	자료 입력 과정에서 비금융 지주회사를 금융으로 구분하여 입력	금융회사 여부를 비금융으로 수정

6. 통계활용 실태

□ 접속 현황

제공 항목	게재 일시	접속자수
[보도자료] 2018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 발표	2018-05-01	14978
[보도자료] 3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2017-05-01	21250
[보도자료] 2016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현황 등 발표	2016-04-01	27466

Ⅶ. 통계작성 문서화 및 이용자서비스

1. 통계작성 문서화

□ 관련자료 첨부

○ 기업집단지정 보도자료(매년 5월 1일 보도)

○ 대규모기업집단 등 지정 제도 개요 및 지정 자료 작성 요령

○ 기업집단포털 사용자 매뉴얼

- 자료 제출 대상 기업집단의 자료 제출 매뉴얼

2. 접근성 및 명료성

2-1.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 자료 게시

분류	주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http://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	https://www.egroup.go.kr/egps/ps/io/mai/mainList.do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2&tblId=DT_15205_100&vw_cd=MT_ZTITLE&list_id=K2_2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기업집단지정)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2&tblId=DT_15205_200&vw_cd=MT_ZTITLE&list_id=K2_2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채무보증현황)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75 (지정)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77 (채무보증)

2-2. 연락처 정보

담당부서	담당자	이메일	전화번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강○○	com3282@korea.kr	044-200-4851

2-3. ~ 2-4. 통계 설명자료 제공 (작성개요~참고자료)

□ 보도자료

○ 기업집단지정일 및 채무보증현황 보도자료에 지정 및 채무보증 현황의 통계 결과 포함 붙임 참조

- 기업집단지정 보도자료
- 채무보증 현황 보도자료

3.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 기업집단포털(https://www.egroup.go.kr/egps/ps/io/mai/mainList.do)에 자산총액 등 마이크로데이터 중 일부 내용 공개(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업종, 종업원 수 등)



순위	기업집단명	동일인	계열회사수	자산총액
1	삼성	이재용	62	399,479
2	현대자동차	정몽구	56	222,654
3	에스케이	최태원	101	189,531
4	엘지	구본무	70	123,135
5	롯데	신동빈	107	116,239
6	포스코	(주)포스코	40	79,709
7	지에스	허창수	71	65,036
8	한화	김승연	76	61,319
9	농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9	58,089
10	현대중공업	정몽준	28	56,055
11	신세계	이명희	39	34,090
12	케이티	(주)케이티	36	30,736
13	두산	박용곤	26	30,518
14	한진	조양호	28	30,307

연도별 지정수 | 기업집단 별 | 자산,공기업 구분 별 | 기업집단별 소속회사현황

▪ 연도별 조회 201805 ▪ 기업집단 DB

조회

Sheet Chart 리포트출력

회사명	대표자	설립일	계열편입일	업종코드	영위업종	종업원수
(주)동부월드	최경진	1989/05/15	1997/06/02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7(
(주)디비메탈	서영준	2008/02/01	2008/03/03	C24	1차 금속 제조업	33(
(주)디비아이엔씨	곽제동	1977/03/15	1995/05/01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368
(주)디비하이텍	최창식	1953/04/28	1995/05/01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97
동부철구(주)	김동균	1984/02/28	1995/02/02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디비라이텍(주)	이재형	1999/07/15	2011/09/01	C28	전기장비 제조업	22
디비스탁인베스트(주)	곽제동	2012/10/18	2012/12/03	M71	전문서비스업	(
디비인베스트(주)	김동성	2009/11/16	2010/01/04	M71	전문서비스업	
디비금융서비스(주)	황원기	2014/01/13	2014/03/01	K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
디비생명보험(주)	이태운	1989/04/14	1997/01/03	K65	보험 및 연금업	56(
디비손해보험(주)	김정남	1968/11/01	1983/05/10	K65	보험 및 연금업	4,43(
디비씨앤에스자동차손해사정(주)	문수원	2011/03/17	2011/04/05	K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74
디비씨에스아이손해사정(주)	나대두	2011/03/17	2011/04/05	K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44(

4. 비밀보호 및 보안

4-1.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비밀보호

□ 비밀보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

-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 등은 비밀 누설 금지, 목적 외 이용 금지 의무

>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4-2. 공표자료의 비밀보호

□ 공표자료의 비밀보호

○ 마이크로데이터는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친족현황, 임원현황 등 자료를 포함하지만 공개되는 부분은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등 재무현황과 소속회사 수 등 일부 자료

○ 마이크로 데이터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DB암호화를 실시하고 제출 전자파일에 대해서는 DRM을 적용하고 있음

○ 공표자료는 별도 보안조치를 하지 않음

4-3.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

□ 자료 훼손 예방 방법

○ 과거에는 출력물을 제출하여 편철 후 보관하였지만 2019년부터는 기업집단포털을 통해 온라인 제출

Ⅷ. 통계기반 및 개선

1. 기획 및 분석 인력

□ 담당자

담당자	경력	역할
사무관1, 조사관1	5~10년	기업집단 지정 계획 및 총괄, 보도자료 작성
과원(사무관4, 조사관4)	5~10년	기업집단 측에서 입력한 자료 검토
외부업체	·	시스템 관리
조사관1	2개월	지정 결과 입력(e-나라지표, KOSIS)

2. 자료처리 시스템

□ 자료처리 시스템 장비현황

○ 인터넷망의 기업집단포털(www.egroup.go.kr)을 통해 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자료입력

○ 입력된 자료를 기업집단국에서 OLAP(WISEitech BI Solution R5)으로 분석

3. 통계 품질관리 및 개선

□ 통계품질 관리 및 개선

○ 기업집단포털 운영

-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오류 시정가능(키가 법인등록번호)
- 통계품질 관리에는 해당사항 없음

4. 외부 개선의견 및 조치사례

□ 기업집단 지정 현황 및 채무보증 현황 통계에 대한 개선 의견 없음

Ⅸ. 참고문헌

1. 기타 문헌

□ 기타 문헌 목록

○ 2017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 재무 현황, 정한욱,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7년 7권 9호

○ 대기업집단 계열사 및 중견기업의 고용 변화와 청년 고용, 권혜자, 이혜연, 김주일, 신태종, 한국고용정보원, 기본연구 2016-53